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11. 14.
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 2005년 11월 7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5년 11월 9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17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5년 11월 10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 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조 유 근)

가. 제안 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7184호, 2004. 3. 5 공포, '04. 9. 6시행)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장애인복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구 장애인복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위원회기능 (안 제2조)

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각종 자료조사 및 수검사업의 실시·기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함.

○ 위원회구성 (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 위촉은 장애인관련 단체의장,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남 식)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

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 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자격을 장애인 관련 단체장과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되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審査結果：原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

의안 번호	187
----------	-----

제출년월일 : 2005.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법률 제7184호, 2004. 3. 5. 공포, 2004. 9. 6. 시행)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 1) 장애인관련 단체의장
-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3(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구성)

나. 예산조치 : 비예산사업

다. 입법예고(2005.10. 7 ~ 2005.10.31) 결과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 서울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통보
(2004. 8.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시)

따로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 복지국장으로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